

등록금징수규정

제정 2009.08.01 1차 개정 2011.01.01
2차 개정 2012.02.10 3차 개정 2016.02.01
4차 개정 2024.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수업료,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본 대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등록금을 징수한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총장은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로 정한 장학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산학협동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총장은 본 대학의 산학협력 유관기관 직원 또는 각종 단기과정의 교육훈련기관 훈련생에 대한 위탁교육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들의 등록금을 상호협약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는 자는 그 법률에 준용한다.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2.26.>

⑤등록금은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본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별(학기 등록금)로 나누어 징수한다. <개정 2024.2.26.>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16.2.1.>

1.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전 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2.26.>
2.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질병,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2.26.>

④정상적인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2.26.>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개정 2024.2.26.>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개정 2024.2.26.>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24.2.26.>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개정 2024.2.26.>

⑤등록금을 분할납부(이하 “분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4회에 한하여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분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계절학기 및 기타 비정규학기의 등록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

1. 분납학생은 최초 당해 학기에 납부해야 할 수업료의 4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1회 분납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부득이 잔여 분납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납부연기 결재를 통해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3. 분납을 신청하고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단, 반환금액 기준은 당해 학기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으로 한다)
4. 분납을 신청하고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할 경우 잔여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분납을 신청하고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분납신청을 취소하고,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제적할 수 있다. <신설 2024.2.26.>

제5조(징수기일) ①등록금의 징수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입생 및 편입생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4.2.2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2.26.>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4.2.26.>

③ <개정 2016.2.1.> <삭제 2024.2.26.>

1. <삭제 2024.2.26.>
2. <삭제 2024.2.26.>
3. <삭제 2024.2.26.>
4. <삭제 2024.2.26.>
5. <삭제 2024.2.26.>

제7조(징벌) ①총장은 개강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21조에 의거하

여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②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총장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성적평가, 졸업, 장학생 선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26.>

제8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제7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의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을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아래와 같은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3. 휴학생의 경우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휴학일로 한다.

가. 1,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